별첨

2019년
「과실비율 인정기준」
주요 개정 내용

Ⅰ. 개정 목록

도표	도표 제목	신설/변경	비고	전	후
도표 129	보행자 전용도로 사고	변경		0	0
도표 212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동일 황색신호)	변경		40:60	50:50
도표 233-1	교차로 내(內) 진로변경 사고	신설			30:70 60:40
도표 237	교차로 추월 사고	변경	일방과실	80:20	100:0
도표 243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 사고	변경	일방과실	10:90	0:100
도표 249-1	이면도로 교행 사고	신설			50:50
도표 250-1	양 차량 추월 사고(앞지르기 금지 장소)	신설			60:40
도표 251	급 추월 사고(중앙선이 점선인 도로)	변경	일방과실	20:80	0:100
도표 252-1	실선 추월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252-2	동시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	신설			50:50
도표 252-3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252-4	차로 변경 사고(안전지대 통과)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254	유턴 사고(직진 대(對) 유턴)	신설	일방과실		20:80 100:0
도표 254-1	유턴 사고(우회전 대(對) 유턴)	신설			30:70 80:20
도표 254-2	양 차량 유턴 사고	신설	일방과실		0:100 20:80
도표 256	기타 도로의 장소에서의 사고	삭제			
도표 256	좌회전 대(對) 우회전 사고	신설			20:80
도표 257	정차 후 출발 사고	신설			80:20
도표 258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259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신설	일방과실		0:100
도표 260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261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신설	일방과실		0:100
도표 262	회전교차로 진입 대(對) 회전	신설			80:20
도표 263	회전2차로 회전 대(對) 회전1차로에서 진출 사고	신설			40:60
도표 264	회전교차로 동시 진입 사고	신설			60:40
도표 265	회전교차로 대진입 사고	신설			10:90

도표	도표 제목	신설/변경	비고	전	후
도표 266	회전1차로에서 진출 대(對) 진입 사고	신설			30:70
도표 267	긴급자동차 직진 신호위반 사고	신설			60:40
도표 268	긴급자동차 좌측통행 사고(1)	신설			60:40
도표 269	긴급자동차 좌측통행 사고(2)	신설			60:40
도표 270	긴급자동차 대로 진입 사고	신설			70:30
도표 271	긴급자동차 추월 사고	신설			60:40
도표 272	긴급자동차 진로변경 사고	신설			90:10
도표 273	긴급자동차 대 진로변경차량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341	소로(우측도로) 직진 대(對) 대로(좌측도로) 좌회전 사고	변경		55:45	45:55
도표 348-1	교차로 내(內) 진로변경 사고(자동차)	신설			60:40 30:70
도표 349-1	교차로 내(內) 진로변경 사고(이륜차)	신설			20:80 50:50
도표 364	후행 직진 대(對) 선행 좌(우)회전 사고	변경		40:60	60:40
도표 366	선행 좌(우)회전 대(對) 후행 직진 사고	변경		60:40	30:70
도표 370	후행 직진 대(對) 선행 좌(우)회전 사고	변경		30:70	50:50
도표 371	선행 좌(우)회전 대(對) 후행 직진 사고	변경		50:50	40:60
도표 376	정체도로에서 교차로 급진입 사고(이륜차)	변경		30:70	70:30
도표 379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곳으로 진입사고(자동차)	변경	일방과실	10:90	0:100
도표 380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곳으로 진입사고(이륜차)	변경	일방과실	80:20	100:0
도표 384-1	교차로 추월 사고(이륜차)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385-1	교차로 추월 사고(자동차)	신설	일방과실		0:100
도표 386	이륜차 급 추월 사고(중앙선이 점선인 도로)	변경	일방과실	70:30	100:0
도표 387	자동차 급 추월 사고(중앙선이 점선인 도로)	변경	일방과실	20:80	0:100
도표 388-1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자동차)	신설	일방과실		0:100
도표 389-1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이륜차)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388-2	자동차 차로 변경 사고(안전지대 통과)	신설	일방과실		100:0
도표 389-2	이륜차 차로 변경 사고(안전지대 통과)	신설	일방과실		0:100
도표 389-3	동시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	신설			40:60
도표 392	자동차 유턴 사고	변경	일방과실	10:90	10:90 100:0
도표 393	이륜차 유턴 사고	변경	일방과실	80:20	80:20 0:100

도표	도표 제목	신설/변경	비고	전	후
도표 392-1	우회전 대(對) 유턴	신설			20:80 70:30
도표 393-1	유턴 대(對) 우회전	신설			70:30 10:90
도표 392-2	선행 유턴 대 후행 유턴	신설	일방과실		0:100 10:90
도표 393-2	후행 유턴 대 선행 유턴	신설	일방과실		100:0 70:30
도표 396	기타 도로의 장소에서의 사고	삭제			
도표 396	좌회전 대(對) 우회전 사고	신설			10:90
도표 396-1	우회전 대(對) 좌회전 사고	신설			70:30
도표 397	정차 후 출발 사고(이륜차)	신설			70:30
도표 397-1	정차 후 출발 사고(자동차)	신설			10:90
도표 398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0:100
도표 398-1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0:100
도표 398-2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 사고	신설	일방과실		100:0 0:100
도표 399	회전교차로 진입 대(對) 회전	신설			10:90 70:30
도표 399-1	회전2차로 회전 대(對) 회전1차로에서 진출 사고	신설			30:70 50:50
도표 399-2	회전교차로 동시 진입 사고	신설			50:50 30:70
도표 399-3	회전교차로 대진입 사고	신설	일방과실		0:100 80:20
도표 399-4	회전1차로에서 진출 대(對) 진입 사고	신설			20-80 60:40
도표 452	기타 도로의 장소에서의 사고	삭제			
도표 453	자전거 도로 사고(전용도로/전용차로/우선도로)	신설	일방과실		0:100 0:100 10:90
도표 508	낙하물 사고	변경	일방과실	40:60	0:100
도표 511	갓길 진로 변경 사고	신설			60:40

Ⅱ. 도표별 개정 주요 내용

1 보행자 전용도로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변 경]
번호	도표 129	좌동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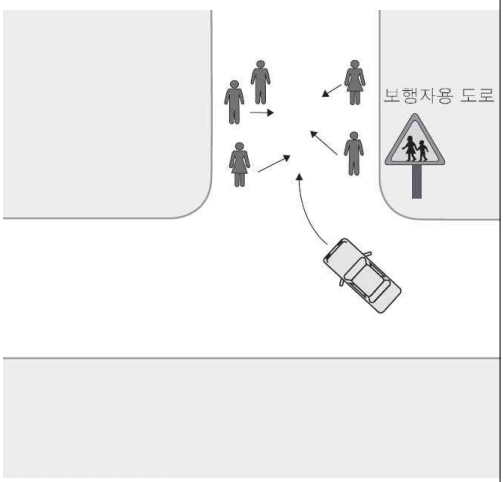	
사고내용	보행자용 도로를 침범한 자동차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보행자 전용도로**를 침범한 자동차가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기본과실	보행자 과실 0	보행자 과실 0
개정사유	◦ 기존 도표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근거한 **제한적 자동차 통행금지 도로**에 대하여 **보행자**의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으나 ◦ **원천적**으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적용 설명**이 **미비** 되어 있는 점을 감안 ◦ **보행자 전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사고를 **기본**으로 하고, 적용사고로 도로교통법 제6조의 **제한적 자동차 통행금지 도로** 사고를 **포함**함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31호 ◦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 도로교통법 제28조(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2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동일 황색신호)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번호	도표 212	도표 212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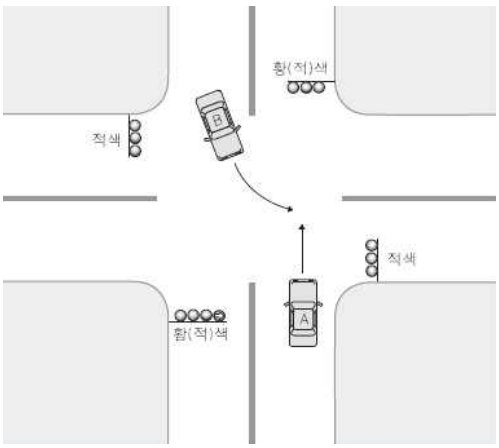	
사고내용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는 B차량간 충돌사고	좌동
기본과실	60:40	50:50
개정사유	◦ 기존 도표는 양 차량 모두 신호위반이라는 점에서 위법하더라도 황색신호는 적색신호에 비해 교차로 진입 금지에 대한 규제력이 약한 점과 통념상 직진이 좌회전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임 ◦ 그러나 금번 개정안은 황색신호에 진입을 신호위반인 점을 강조하여 양쪽의 주행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위반을 한 것으로 과실을 균분하여 이에 따라 기본과실 변경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3 교차로 내(內) 진로변경 사고

<table>
<tr><th>항목</th><th>개정 前</th><th colspan="2">개정 後 [신 설]</th></tr>
<tr><td>번호</td><td>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8</td><td colspan="2">도표 233-1</td></tr>
<tr><td rowspan="2">도표</td><td rowspan="2"> </td><td colspan="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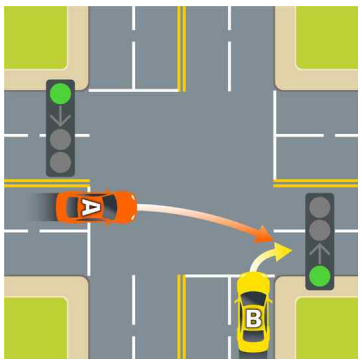 </td></tr>
<tr><td colspan="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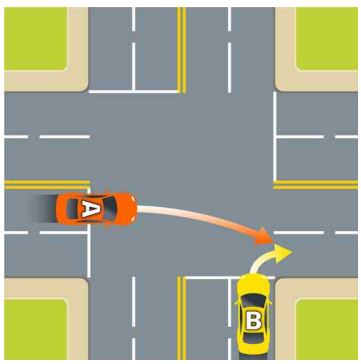 </td></tr>
<tr><td>사고내용</td><td>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에 1차로 직진중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A차량과 우회하는 B차량간 사고</td><td colspan="2">Case1) 좌동(위치 조정)
Case2) Case1에서 신호 없음</td></tr>
<tr><td>기본과실</td><td>30:70</td><td>30:70</td><td>60:40</td></tr>
<tr><td>개정사유</td><td colspan="3">◦ A차량은 직진신호에 따른 우선주행권을 B차량은 A차량의 교차로 진로변경이라는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양측 입장을 좁히기 어려운 점,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내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점, 신호 유무에 따라 가피판단이 다른 점 등 분쟁요인이 많음에도 기준 부재
◦ Case1은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A차량에게 우선주행권이 있고, 도표 228과 비교시 교차로 진로변경의 과실 10%를 가산
◦ Case2는 도표 229와 비교시 A차량은 신호에 의해 보호받지 않음에도 교차로에서 진로변경한 과실 20%를 가산하여 기준 설정</td></tr>
<tr><td>관련법규</td><td colspan="3">◦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3항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td></tr>
<tr><td>연관도표</td><td colspan="3">◦ 연관되는
도표 348-1 가(60:40), 나(70:30)
도표 349-1 가(20:80), 나(50:50) 신설</td></tr>
</table>

참고판례	◦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3107 판결**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그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교차로 추월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변 경]
번호	도표 237	좌동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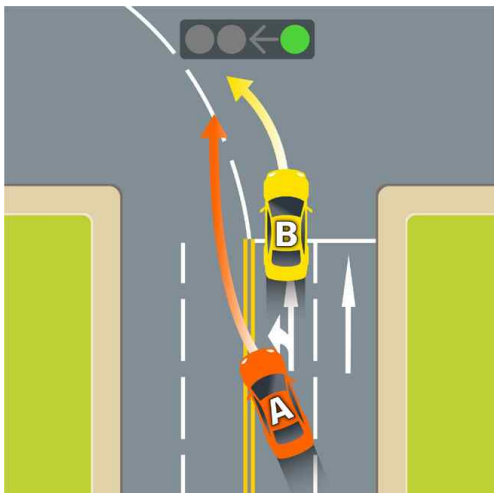
사고내용	동일폭 교차로에서 A차는 추월 직진, B차(좌회전 주행방법 위반)는 선행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	교차로에서 A차는 중앙선 침범 추월 하고, B차는 선행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
기본과실	80:20	100:0
개정사유	◦ **개정 前 도표**는 **좌회전차량**의 **중앙선**에 **다가서기 위반**을 **가정**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대다수 좌회전 차로**의 **폭**은 다가서기 위반으로 **후행차량**이 **B차량**을 **직진**으로 **오해**할 정도로 **넓지 않으며,** ◦ **A차량**이 **정상 좌회전**하는 **B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감안하여 **사고내용** 및 **기본과실 변경**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제4항 ◦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제3항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2항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연관도표	◦ 연관되는 도표 384-1(100:0), 도표 385-1(0:100) 신설	
참고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선고 2016나36026 판결 진행도로가 좌측으로 굽어지는 편도 1차로 교차로에서 피고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를 추월하다가 사고가 발생, 앞지르기 위반에 대한 피고의 과실이 매우 크나 원고도 도로형태를 고려 좌회전 하기 전 사이드미러를 통해 주변을 살펴야 하는 점을 소홀히 해야 함. 원고 90% : 피고 10%	

5 차도에서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변 경]
번호	도표 243	좌동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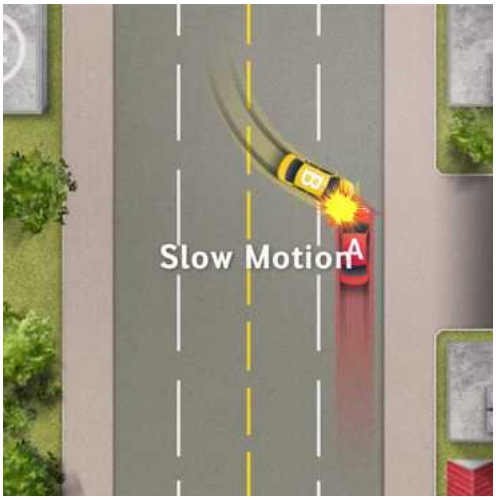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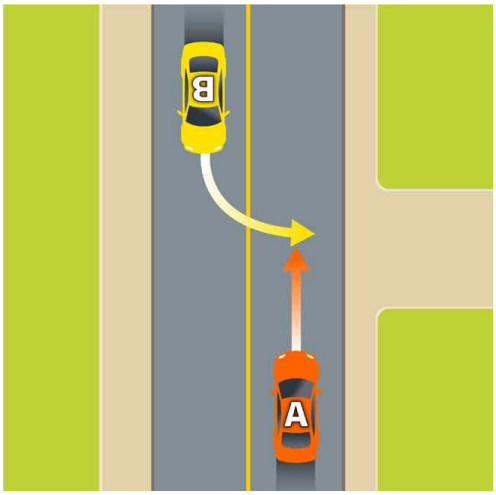
사고내용	직선도로(중앙선 점선)에서 직진 A차량과 맞은편 방향에서 중앙선 침범 좌회전한 B차량이 충격한 사고	직선도로(중앙선 실선)에서 직진 A차량과 맞은편 방향에서 중앙선 침범 좌회전한 B차량이 충격한 사고
기본과실	10:90	0:100
개정사유	◦ 실제 사고는 **중앙선**이 **실선**인 곳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고내용 변경**(다만 **실선**과 **점선**에서의 **차이**는 **없음**) ◦ 도로교통법 상 **중앙선**의 **의미**가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침범**할 수 있다는 점(**실선**은 **원칙적**으로 **금지**), **침범 즉시** 바로 **본래 차로**로 **복귀**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 **A차량**이 **전방주시**하여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기본가정**으로 하여 기본과실 변경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	
참조판결	◦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58606 판결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연관도표	◦ 연관되는 도표 379(0:100), 도표 380(100:0)의 기본과실 변경	

6 이면도로 교행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번호	-	도표 249-1 [신 설]
도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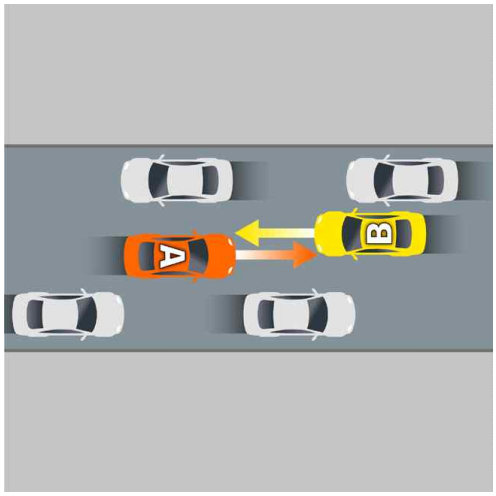
사고내용	-	좁은 도로폭 등으로 인해 양 차량이 계속 주행하기 위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 양 차량 교행 중 발생한 사고
기본과실	-	50:50
개정사유	◦ 좁은 도로폭의 **이면도로**에서는 **서행** 및 **양보 운전**이 **필수**불가결함에도 **상대차량 위치**를 **주의**하지 않고 **계속주행**하다 **사고발생** ◦ **양 차량** 모두 **동일한 잘못**이 있어 **과실 균분**함이 **타당**하나 **기준 부재** 및 **찰나**의 **일시정지**를 이유로 **일방과실** 등 **무리한 주장**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 위해 기준 설정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제2항	
참조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31. 선고 2016나66409 판결 양 차량이 좁은 도로에서 교행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두 대의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운 도로에서 서로 진로를 양보할 의무를 위반한 점을 종합하여 결정, A차량 50% : B차량 50%	

7 양 차량 추월 사고(앞지르기 금지 장소)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번호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7	도표 250-1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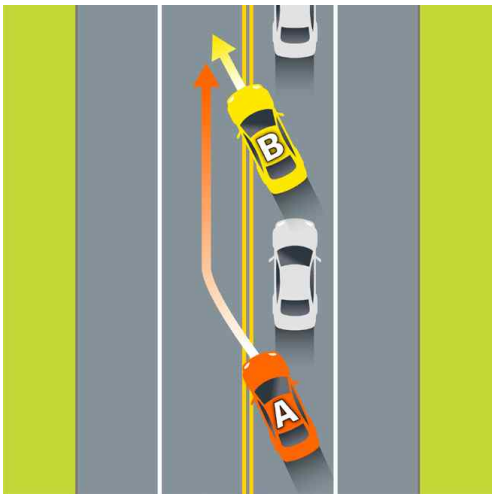
사고내용	차량정체 중, 후행 A차량이 중앙선침범 추월 중 시간차를 두고 중앙선 침범 추월을 시도하는 B차량과 발생한 사고	좌동
기본과실	60:40	좌동
개정사유	◦ **양 차량 모두 위법**하나 **기준 부재**로 보상현장에서 **가해자** 및 **피해자 구분**, **기본과실**에 대하여 **제각각 판단**하는 문제점 존재 ◦ **A차량**은 B차량보다 **위법행위 인지**(전방주시 등) 및 **대응**(제동 및 감속 등)이 **용이**하여 **사고예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사고내용 및 기본과실 설정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3항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	
참조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14. 선고 2017나49784 판결 양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서, 후행 A차량은 B차량에 비하여 시야가 보다 넓게 확보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교통상황을 판단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B차량의 과실은 40%	

8 추월 사고(중앙선이 점선인 도로)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변 경]
번호	도표 251	좌동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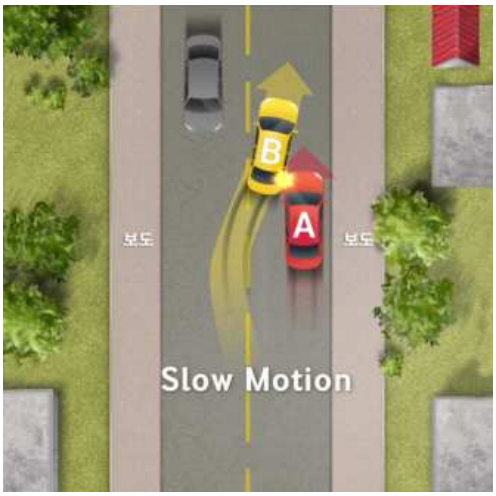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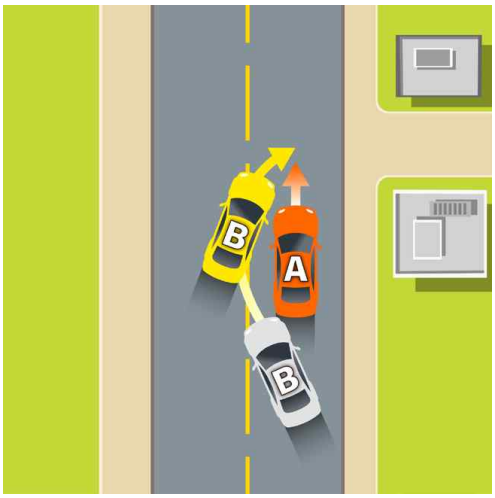
사고내용	중앙선이 점선인 직선도로에서 후방 B차량이, 선행 A차량(우측 서행)을 추월 주행 중 충격한 사고	중앙선이 점선인 직선도로에서 후방 B차량이, 선행 A차량 **근접거리**에서 차도가 아닌 곳으로 진입, 회전 등을 위해 **추월** 중 충격한 사고
기본과실	20:80	0:100
개정사유	◦ 개정 前 도표는 **A차량**이 **B 차량**의 **추월 양보**를 위해 **우측 서행**을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 실제 사고는 **A차량**이 **차로중앙**에서 **정상주행**하고 있음에도 **B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발생**하고 있어 **사고내용** 및 **기본과실 변경**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양보의무)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 제3항, 제4항 ◦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장소) 제3항	
참조판결	◦ **대법원 1987.7.7. 선고 86도2597 판결** 황색점선인 중앙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선의 성질상 운행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차선에 따른 운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월선의 필요성도 없고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것은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연관도표	◦ 연관되는 도표386(100:0), 도표387(0:100)의 기본과실 변경	

9 실선 추월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번호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4	도표 252-1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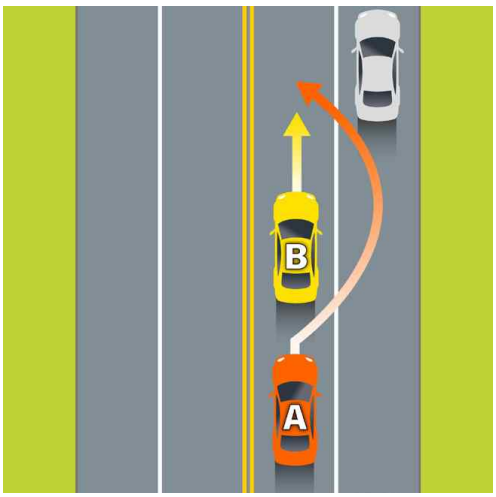
사고내용	직선도로에서 A차량은 선행 실선차로변경하고 B차량은 후행 직진주행중 발생한 사고	직선도로에서 A차량은 **추월** 실선차로변경하고 B차량은 직진주행 중 발생한 사고
기본과실	90:10	100:0
개정사유	◦ **차로변경**의 **사고형태**는 **다양**함에도 **기존**의 **기준**(**도표 252**)은 **단 하나**의 **형태**만 **설정**하고 있어 일부 사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사고당사자간 **원활한 과실협의 저해** 및 **피해자**의 **불만 증가** ◦ **직진차량**에게 **전방주시의무**가 있으나 실선은 차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이고, **실선**에서의 **추월**은 **급차로변경**과 **유사**하여 **직진차량**이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기본과실을 일방과실로 설정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5항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제3항 ◦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제1항, 제3항, 제4항	
참조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선고 2017나53271 판결 피고는 공사로 인해 편도 3차로가 2차로로 합쳐지는 합류도로에서 2차로로 진행하다가 차선이 실선인 구간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원고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 발생, 원고10 %: 피고 90%	

10 동시 차로 변경(진로 변경)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번호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6	도표 252-2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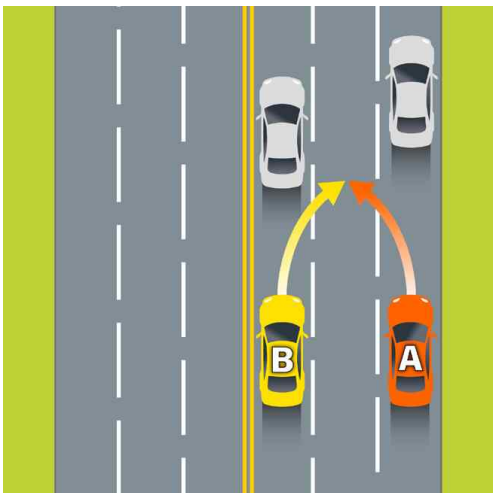
사고내용	1차로 주행중인 B차량과 3차로 주행중인 A차량이 동시에 같은 차로(2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발생한 사고	좌동(동영상 수정)
기본과실	50:50	좌동
개정사유	◦ **양 차량 모두 동일**한 **잘못**이 있어 **과실균분**함이 타당하나 **기준부재** 및 **약간**의 **선/후행 차이**를 **이유**로 **일방과실** 등 **무리한 주장**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고내용 및 기본과실 설정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2	
참조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9.22. 선고 2016나21826 판결 양 차량이 동시에 같은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발생한 접촉사고로서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시 상대방 차량의 주행 행태를 제대로 살피 못한 채 변경한 과실이 있으나, B차량이 1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A차량이 합류지점에서 진입하여 4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A차량의 과실을 60%로 봄	
연관도표	◦ 연관되는 도표 389-3(40:60) 신설	

11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번호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13	도표 252-3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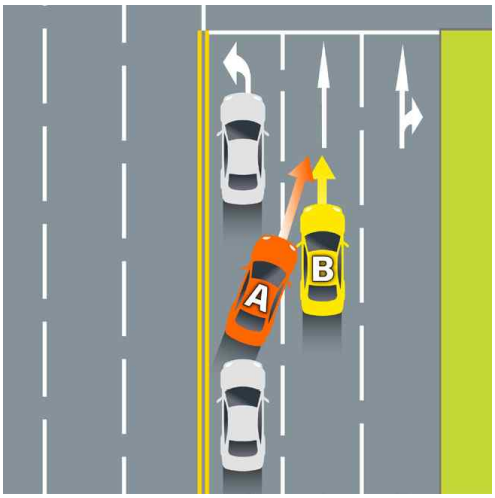
사고내용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중인 A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로 진로변경 중 직진 주행하는 B차량과 발생한 사고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대기중인 A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로 **급 진로변경** 중 직진주행 하는 B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
기본과실	80:20	100:0
개정사유	◦ 차로변경의 사고형태는 다양함에도 기존의 기준(도표 252)은 단 하나의 형태만 설정하고 있어, 일부 사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사고당사자간 원활한 과실협의 저해 및 피해자의 불만 증가 ◦ 일반적인 차로변경보다 A차량의 정체 중 차로변경은 B차량이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A차량 주행속도가 B차량보다 현격히 느려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른 B차량과 충돌가능성이 높다는 점 고려 ◦ B차량의 충격부위가 측면일 경우 A차량의 급 차로 변경과 같이 직진차량의 예측·회피 어려움이 상당하므로 기본과실을 일방과실로 설정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	
연관도표	◦ 연관되는 도표 388-1(0:100), 도표 389-1(100:0) 신설	

12 차로 변경 사고(안전지대 통과)

<table>
<tr><th>항목</th><th>개정 前</th><th colspan="2">개정 後 [신 설]</th></tr>
<tr><td>번호</td><td>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24</td><td colspan="2">도표 252-4</td></tr>
<tr><td>도표</td><td>
</td><td colspan="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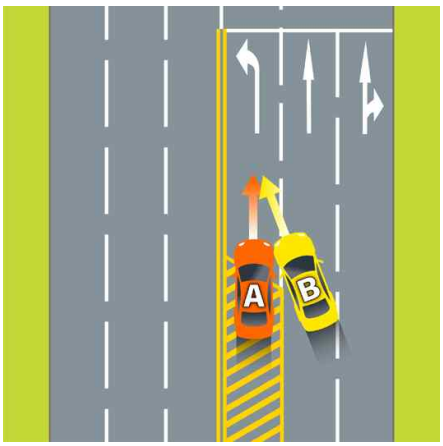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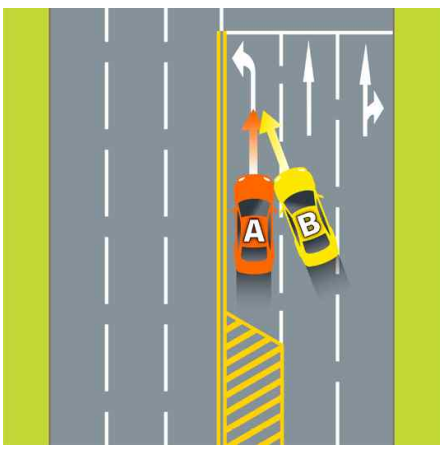
</td></tr>
<tr><td>사고내용</td><td>안전지대가 있는 직선도로에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1차로를
후행 주행하는 A차량과
안전지대가 종료되어 1차로로
선행 진로변경하는 B차량간 사고</td><td colspan="2">Case1) 좌동
(A차량 안전지대 벗어나기 전)
Case2) 좌동
(A차량 안전지대 벗어난 후)</td></tr>
<tr><td>기본과실</td><td>70:30</td><td>Case1) 100:0</td><td>Case2) 70:30</td></tr>
<tr><td>개정사유</td><td colspan="3">◦ 안전지대 통과 사고에 대한 기준이 부재하여 사고시 각기 달리 판단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 설정
◦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안전지대를 통과한 A차량의 과실이 중대하며,
◦ Case1과 같이 A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B차량의 예측범위를 벗어났으므로 A차량의 전적인 과실 책임이 있으나,
◦ Case2와 같이 A차량이 안전지대를 통과하였다면, B차량은 진로 변경의 과실 책임이 있음을 감안함</td></tr>
</table>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5항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
참조판결	◦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44153 판결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전하는 다른 자동차가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자동차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이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자동차가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면책).
연관도표	◦ 연관되는 도표 388-2 가(100:0), 나(60:40) 신설 도표 389-2 가(0:100), 나(20:80) 신설

13 유턴 사고(직진 대(對) 유턴)

<table>
<tr><th>항목</th><th>개정 前</th><th>개정 後 [변 경]</th></tr>
<tr><td>번호</td><td>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16
/ 도표 254</td><td>도표 254</td></tr>
<tr><td>도표</td><td>
</td><td>

</td></tr>
<tr><td>사고내용</td><td>교차로에서 직진하는 A차량과
유턴하는 B차량간 발생한 충격사고</td><td>Case1) 좌동(상시유턴구역)
Case2) 좌동(신호에 따른 유턴)</td></tr>
<tr><td>기본과실</td><td>20:80</td><td>Case1) 20:80 | Case2) 100:0</td></tr>
<tr><td>개정사유</td><td colspan="2">◦ 유턴사고는 신호형태(상시유턴구역 또는 신호에 따른 유턴) 및 상대차량의 주행형태(직진, 우회전 등)에 따라 과실 차이가 존재함에도 기존 도표 254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이용자의 오해 발생
◦ 상시유턴구역에서는 진로변경의 반경이 더 큰 유턴차량의 주의의무가 크며, 신호에 따른 유턴에서는 직진차량이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감안, 기준 설정</td></tr>
<tr><td>관련법규</td><td colspan="2">◦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제1항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6 제309의2호・제311호・제407호</td></tr>
</table>

참조판결	◦ 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다29934 판결 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맞은 편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9.26. 선고 2017나31065 판결 B차량이 유턴지점에서 유턴을 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을 하다가 B차량의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A차량과 충돌한 사고 (B차량은 유턴을 함에 있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와 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반적인 개활지에서 유턴하는 경우보다 강한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유턴 이후에도 터널을 빠져나오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 : B과실 100%
연관도표	◦ 연관되는 도표 392 가(10:90), 나(100:0)의 기본과실 변경 도표 393 가(80:20), 나(0:100)의 기본과실 변경

14 유턴 사고(우회전 대(對) 유턴)

<table>
<tr><th>항목</th><th>개정 前</th><th colspan="2">개정 後 [신 설]</th></tr>
<tr><td>번호</td><td>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15</td><td colspan="2">도표 254-1</td></tr>
<tr><td>도표</td><td rowspan="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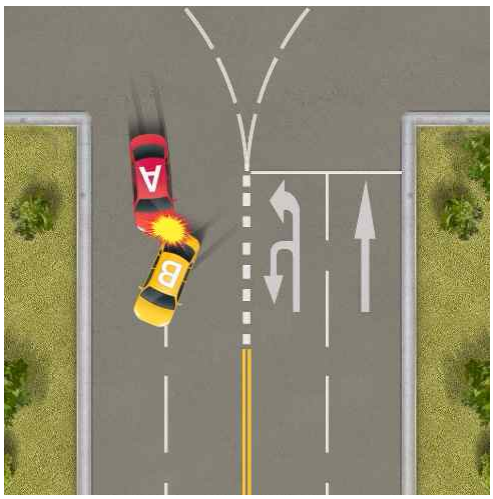
</td><td colspan="2">
</td></tr>
<tr><td colspan="2">
</td></tr>
<tr><td>사고내용</td><td>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정상신호에 유턴하는 B차량간 발생한 충격사고</td><td colspan="2">Case1) 상시유턴구역
Case2) 신호에 따른 유턴</td></tr>
<tr><td>기본과실</td><td>60:40</td><td>Case1) 30:70</td><td>Case2) 80:20</td></tr>
<tr><td>개정사유</td><td colspan="3">◦ 유턴사고는 신호형태(상시유턴구역 또는 신호에 따른 유턴) 및 상대차량의 주행형태(직진, 우회전 등)에 따라 과실 차이가 존재함에도 기존 도표 254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이용자의 오해 발생
◦ 상시유턴구역에서는 진로변경의 반경이 더 큰 유턴차량이, 신호에 따른 유턴에서는 신호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우회전 차량이 주의의무가 크다는 점을 감안, 사고내용 및 기본과실 설정</td></tr>
</table>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제1항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6 제309의2호・제311호・제407호
참조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8.16. 선고 2017나66389 판결 B차량은 신호에 따라 유턴을 거의 완료하였고, A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B차량의 우측 뒷부분이 충돌한 경우, B차량 과실 0%
연관도표	◦ 연관되는 도표 392-1 가(20:80), 나(70:30) 신설 도표 393-1 가(70:30), 나(10:90) 신설

15 양 차량 유턴 사고

<table>
<tr><th>항목</th><th>개정 前</th><th colspan="2">개정 後 [신 설]</th></tr>
<tr><td>번호</td><td>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17</td><td colspan="2">도표 254-2</td></tr>
<tr><td>도표</td><td> </td><td colspan="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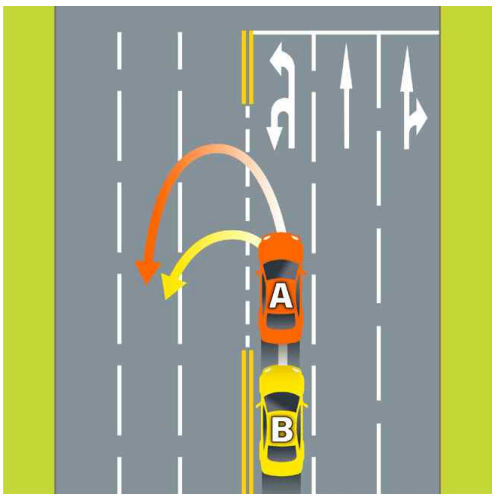 </td></tr>
<tr><td rowspan="2">사고내용</td><td></td><td colspan="2">Case1)
교차로 유턴 차로에서
선행 A차량이 유턴하고,
후행 B차량이 급 유턴 중
발생한 사고</td></tr>
<tr><td>교차로 유턴차로에서 대기 중인
선행 A차량과 후행 B차량이
동시에 대기 중인 위치에서
유턴 중 발생한 사고</td><td colspan="2">Case2) 좌동</td></tr>
<tr><td>기본과실</td><td>25:75</td><td>Case1) 0:100</td><td>Case2) 20:80</td></tr>
<tr><td>개정사유</td><td colspan="3">◦ 유턴사고는 상대차량의 주행형태(직진, 우회전, 유턴 등)에 따라 과실 차이가 존재함에도 기존 도표 254가 이를 반영하지 못함
◦ 교통안전을 위해 후행 차량은 선행 유턴하는 차량의 경로를 따라 유턴함이 타당, 선행 차량이 후행 차량의 유턴 경로 예측 어려움
◦ 다만 Case1의 경우 A차량 입장에서 B차량의 주행이 회피하기 어려운 급 진로변경에 해당한다는 점,
◦ Case2의 경우 선행차량은 유턴시 후행차량의 유턴여부가 확인되므로 사고예측이 가능한 점을 감안, 기준 설정</td></tr>
<tr><td>관련법규</td><td colspan="3">◦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제1항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6 제309의2호・제311호・제407호</td></tr>
</table>

연관도표	◦ 연관되는 도표 392-2 가(0:100), 나(10:90) 신설 도표 393-2 가(100:0), 나(70:30) 신설

16 좌회전 대(對) 우회전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번호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18	도표 256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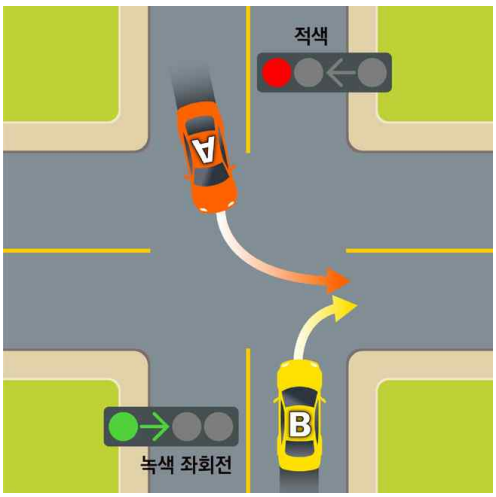
사고내용	교차로(편도 2차로)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 하는 A차량과 대향하여 우회전하는 B차량간의 충격사고	교차로(**편도 1차로**)에서 정상신호에 좌회전 하는 A차량과 대향하여 우회전하는 B차량간의 충격사고
기본과실	30:70	20:80
개정사유	◦ 상기 사고는 상대차량이 본인의 차량을 인지하고 있어 주의할 것이라고 착오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기준 부재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분쟁 해소 위해 기준 신설 ◦ B차량은 신호와 관계없이 우회전 가능하나, A차량은 신호를 준수하여 주행했으므로 우선주행권이 있으므로, B차량은 교차로 내 주행 중인 A차량에 주의하며 우회전해야 함 ◦ 다만 기존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18은 A차량의 좌회전 형태가 대좌회전 형태이므로 정상 좌회전 형태로 사고내용 변경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4항	
참고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6. 선고 2017나63155 판결 원고차량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원고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이 맞은편 교차로에서 크게 우회전 하던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충돌, 이때 피고차량은 교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함, 원고 20% : 피고 80%	
연관도표	◦ 연관되는 도표 396(10:90), 도표 396-1(70:30) 신설	

17 정차 후 출발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번호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14	도표 257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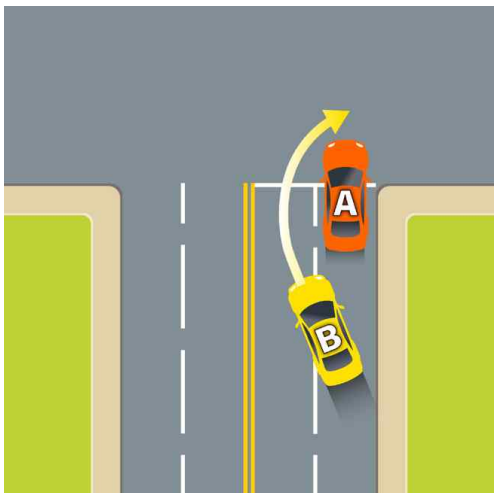
사고내용	(신호를 적용 받지 않음) 교차로에서 A차량이 정차 중 출발하려다 뒤에서 추월하는 B차량을 충격한 사고	Case1) 좌동(**주행경로 등 수정**) Case2) **직선도로일 경우**
기본과실	80:20	80:20
개정사유	◦ 승객 및 동승자의 승하차, 적재물 하차 등을 위해 도로 가장자리에서는 수시로 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해 상기 상고 및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기준 부재로 분쟁해결 어려움 ◦ B차량 추월시 주의의무를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설정하였고 실질적 사고원인은 B차량의 주행행태보다 B차량이 예측하기 어려운 A차량의 정차 후 출발에 있어 Case1), Case2)의 기본과실 동일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5호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	
연관도표	◦ 연관되는 도표 397(70:30), 도표 397-1(10:90) 신설	

18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번호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9	도표 258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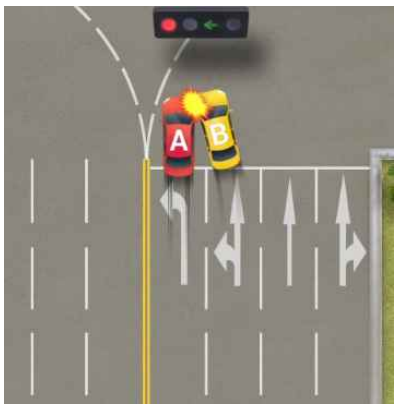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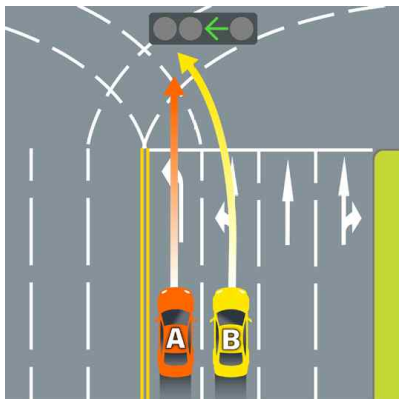
사고내용	좌회전 신호에 A차량은 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직진하고, B차량은 직진·좌회전 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	Case1) 좌동(충격부위 등 수정) Case2) 신호를 녹색 직진·좌회전 신호로 변경하고, B차량을 선행 좌회전으로 변경
기본과실	90:10	100:0
개정사유	◦ 노면표시 위반 사고의 형태는 다양함에도 기존의 기준에 미비되어 있어 해당 사고 시 분쟁 발생 및 원활한 해결 어려움 ◦ 도로교통법 상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직진은 별도의 금지표시가 없는 이상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사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중과실 항목인 신호·지시위반으로 오해 ◦ 좌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시 일방과실 사고유형을 명확히 설정하여 상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사고내용 및 기본과실 설정	
관련법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별표2, 별표6 제537호
참고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6.23. 선고 2016나66393 판결
연관도표	◦ 연관되는 도표 398 가(100:0), 나(0:100) 신설

19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좌회전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번호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10	도표 259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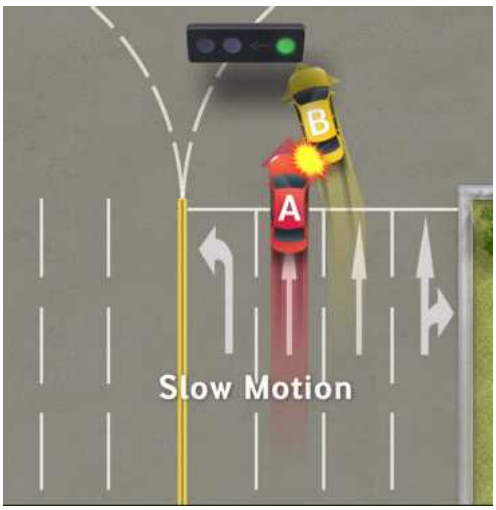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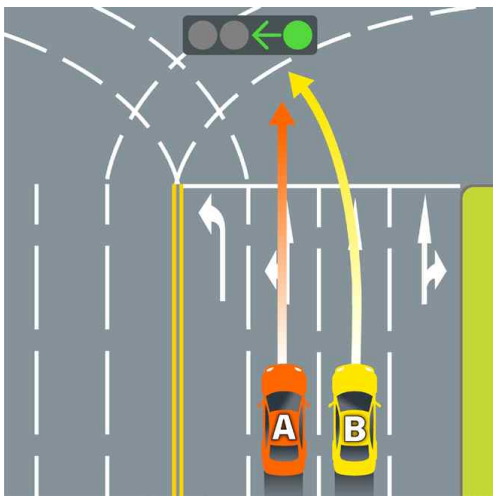
사고내용	직진신호에 양차량 모두 직진 노면표시가 있는 곳에서 A차량은 직진하고 B차량은 좌회전 중 발생한 사고	좌동(충돌위치 및 부위 조정)
기본과실	0:100	0:100
개정사유	◦ 노면표시 위반 사고의 형태는 다양함에도 기존의 기준에 미비되어 있어 해당 사고 시 분쟁 발생 및 원활한 해결 어려움 ◦ 도로교통법 상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좌회전은 도로교통법 제25조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나, 해당 사고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중과실 항목인 신호·지시위반으로 오해 ◦ 그간 직진차량에게 교차로에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과실 설정	
관련법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별표2, 별표6 제537호	
참고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24. 선고 2016나76772 판결 편도 4차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원고차량은 1차로에서 정상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차량은 좌회전이 금지된 3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사고 발생(피고차량은 혈중알코올농도 0.082% 음주운전을 하였음), 원고 0% 피고 100%	
참조판결	◦ 연관되는 도표 398-1 가(100:0), 나(0:100) 신설	

20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번호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11	도표 260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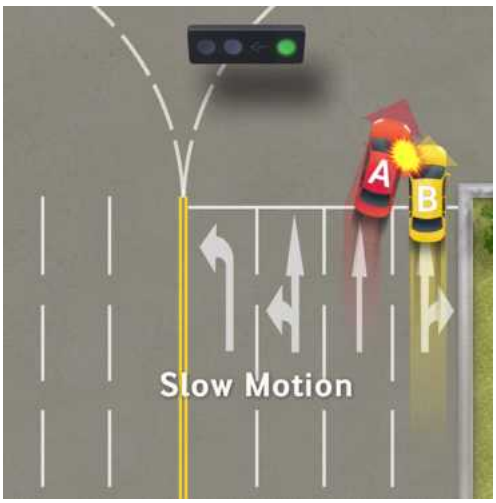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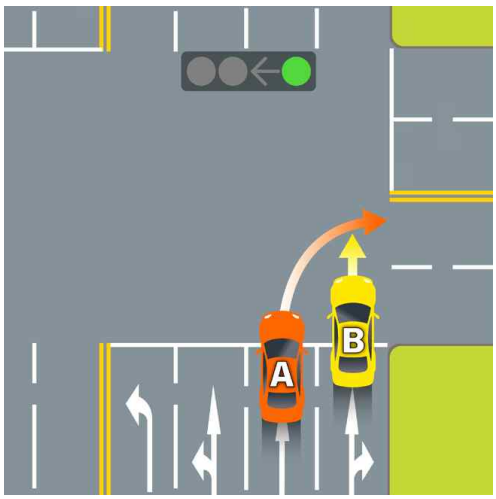
사고내용	-	교차로 통과 전 대비 통과 후의 차로 개수가 동일하거나 많음
	직진신호에서 직진노면표시 3차로의 A차량은 우회전하고 직진·우회전노면표시 4차로의 B차량은 직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직진신호에서 직진노면표시 3차로의 A차량은 추월 우회전하고 직진·우회전노면표시 4차로의 B차량은 직진하던 중 발생한 사고
기본과실	90:10	100:0
개정사유	◦ 노면표시 위반 사고의 형태는 다양함에도 기존의 기준에 미비되어 있어 해당 사고시 원활한 분쟁해결 어려움 ◦ 도로교통법 상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우회전은 도로교통법 제25조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나, 해당 사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중과실 항목인 신호·지시위반으로 오해 ◦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시 일방과실 사고유형을 명확히 설정하여 관련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사고내용 및 기본과실 설정	
관련법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별표2, 별표6 제537호·제538호	
연관도표	◦ 연관되는 도표 398-2 가(100:0), 나(0:100) 신설	

21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 직진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번호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11-1	도표 261
도표		
사고내용	교차로 통과 전 대비 통과 후의 차로개수가 동일함	교차로 통과 전 대비 통과 후의 차로개수가 적음
	직진신호에서 직진·우회전노면표시 3차로의 A차량은 선행 우회전하고 우회전노면표시 4차로의 B차량은 직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직진신호에서 직진·우회전노면표시 3차로의 A차량은 선행 우회전하고 우회전노면표시 4차로의 B차량은 직진하던 중 발생한 사고
기본과실	30:70	0:100
개정사유	◦ 노면표시 위반 사고의 형태는 다양함에도 기존의 기준에 미비되어 있어 해당 사고시 원활한 분쟁해결 어려움 ◦ 도로교통법 상 우회전 노면표시 차로에서의 직진은 별도의 금지표시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사고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중과실 항목인 신호·지시위반으로 오해 ◦ 직진 노면표시 차로에서 우회전시 일방과실 사고유형을 명확히 설정하여 상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사고내용 및 기본과실 설정	
관련법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2항 제1호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별표2, 별표6 제537호·제538호	

22 회전교차로 진입 대(對) 회전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번호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28	도표 262
도표		
사고내용	회전교차로(1차로형) 교차로에 진입하는 A차량과 교차로 내 회전하는 B차량간의 충격사고	좌동(충격부위 등 수정)
기본과실	80:20	80:20
개정사유	◦ 2010년 회전교차로 도입 이후 해당 시설물이 지속 증가하여 사망·부상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이용방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 사고의 원인 대부분이 교차로 진입시 회전차량 양보 및 서행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므로 올바른 이용 안내 및 경각심 제고 위해 관련 기준 신설 ◦ 회전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은 우선주행권이 있으나 회전하는 차량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전방주시 주의의무가 있음을 감안 기준 설정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6항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1항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제228호·제304호·제522호·제526의2호	
연관도표	◦ 연관되는 도표 399 가(10:90), 나(70:30) 신설	

23 회전2차로 회전 대(對) 회전1차로에서 진출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번호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29	도표 263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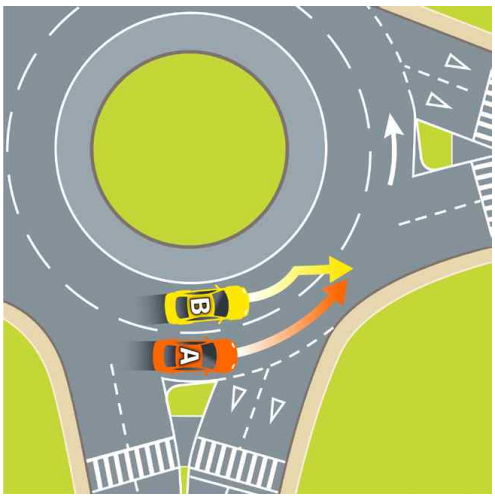
사고내용	2차로형 회전교차로 회전 2차로를 주행하는 A차량과 회전1차로에서 진출하는 B차량간 충격사고	좌동(주행경로 등 수정)
기본과실	40:60	좌동
개정사유	◦ 2010년 회전교차로 도입 이후 해당 시설물이 지속 증가하여 사망·부상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이용방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 사고의 원인 대부분이 교차로 진입시 회전차량 양보 및 서행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므로 올바른 이용 안내 및 경각심 제고 위해 관련 기준 신설 ◦ 회전교차로는 일반교차로와 달리 진입과 진출이 수시로 발생하여 보통의 진로변경(도표 252)보다 본래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주의의무가 크다는 점을 감안 기준 설정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6항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1항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제228호·제304호·제522호·제526의2호	
연관도표	◦ 연관되는 도표 399-1 가(30:70), 나(50:50) 신설	

24 회전교차로 동시 진입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번호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30	도표 264
도표		
사고내용	회전교차로(2차로형) 1차로에서 진입하는 A차량과 2차로에서 진입하는 B차량 모두 회전1차로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	좌동(주행경로 등 수정)
기본과실	60:40	좌동
개정사유	◦ 2010년 회전교차로 도입 이후 해당 시설물이 지속 증가하여 사망·부상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이용방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 사고의 원인 대부분이 교차로 진입시 회전차량 양보 및 서행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므로 올바른 이용 안내 및 경각심 제고 위해 관련 기준 신설 ◦ 회전교차로 진입 차량은 우회전 진입(경찰청 의견)이므로 A차량은 우측 가장자리에 가까운 B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점, ◦ 교차로 진입 시 서행이므로 A차량이 급 차로 변경이 아닌 이상 진로변경이 예상될 때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6항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1항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제228호·제304호·제522호·제526의2호	
연관도표	◦ 연관되는 도표 399-2 가(50:50), 나(30:70) 신설	

25 회전교차로 대진입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번호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31	도표 265
도표		
사고내용	회전교차로(2차로형) 회전1차로에서 주행하는 A차량과 회전1차로로 대진입하는 B차량간의 충격사고	좌동(충격부위 등 수정)
기본과실	10:90	좌동
개정사유	◦ 2010년 회전교차로 도입 이후 해당 시설물이 지속 증가하여 사망·부상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이용방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 사고의 원인 대부분이 교차로 진입시 회전차량 양보 및 서행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므로 올바른 이용 안내 및 경각심 제고 위해 관련 기준 신설 ◦ 도표 262와 비교 시, B차량은 진로변경하려는 차로에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 주의하지 않고 연속 진로 변경한 과실을 가산함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6항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1항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제228호·제304호·제522호·제526의2호	
참조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9.선고 2017나67553판결	

	야간에 회전교차로에서 원고차량은 회전교차로의 2차로 도로 중 내측 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우측 연결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면서 원고차량의 진행을 보지 못하고 곧바로 회전교차로의 내측 차로로 진행하다가 피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한 사고, 피고 차량은 일시정지 또는 양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곧바로 진입한 점, 진입 각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미리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연관도표	◦ 연관되는 도표 399-3 가(0:100), 나(80:20) 신설

26 회전1차로에서 진출 대(對) 진입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번호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32	도표 266
도표		
사고내용	회전교차로(2차로형) 회전1차로에서 진출하려는 A차량과 2차로에서 진입하는 B차량간의 충격사고	좌동(충격부위 등 수정)
기본과실	30:70	좌동
개정사유	◦ 2010년 회전교차로 도입 이후 해당 시설물이 지속 증가하여 사망·부상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나, 이용방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 사고의 원인 대부분이 교차로 진입시 회전차량 양보 및 서행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므로 올바른 이용 안내 및 경각심 제고 위해 관련 기준 신설 ◦ 도표 262와 비교 시, A차량은 회전차로에서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우선주행권이 있으나, 진출을 위해 진로를 변경한 과실을 감안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6항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1항 ◦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제1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제228호·제304호·제522호·제526의2호	
참조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7.선고 2017나47290 판결 회전교차로에서 진출을 하기 위하여 우선 위 교차로로 진입중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 내측 차로에서 외측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뒤 진출을 시도하여야 함에도 피고차량 운전자는 내측 차로에서 곧바로 진출을 시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회전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지 않은 채 교차로에서 진입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사고는 회전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진출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40:60으로 봄이 상당하다.
연관도표	◦ 연관되는 도표 399-4 가(20:80), 나(60:40) 신설

27 긴급자동차 직진 신호위반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번호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22	도표 267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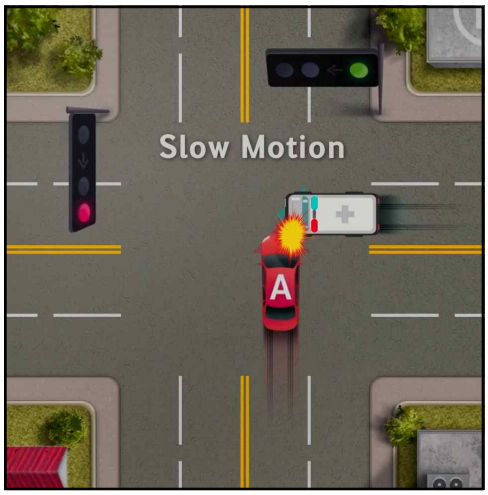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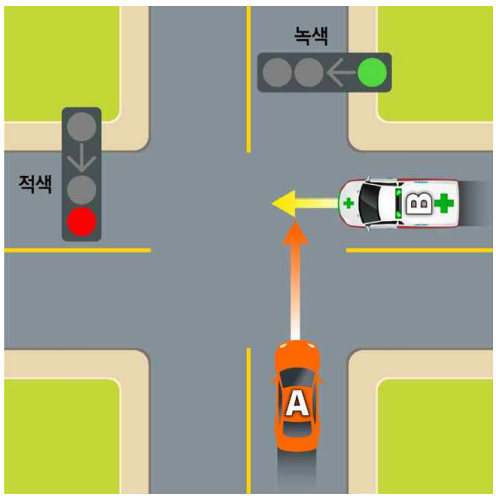
사고내용	교차로에서 녹색 직진신호에 직진하는 A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적색 직진신호에 직진하는 B 긴급차량과의 사고	좌동
기본과실	60:40	좌동
개정사유	◦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우선통행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실제 사고시에는 일반자동차 사고에 준용하는 경향 존재, 긴급차량측 불만으로 분쟁 발생 잦음 ◦ 최근「길 터주기 운동」확산, 긴급차량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상향(20만원→200만원) 등 긴급차량 우선 통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 및 제도가 강화된 점을 반영 기준 신설 *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개정(2017.12.26.) ◦ 도로교통법 상 긴급차량 우선 통행 조항(제29조 제2항)이 있어, 긴급차량이 아닌 차량은 신호기의 신호에도 불구 교차로에 진입하는 긴급차량에게 양보해야 함(이 경우 주의를 기울이면 사이렌을 울리면서 진입하는 긴급차량을 인식할 수 있음) ◦ 다만 긴급상황으로 부득이한 신호위반이라도 긴급차량은 안전에 주의해야 함(제29조 제3항) ◦ 제158조의2(형의 감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차량을 피해차량으로 판단, A차량 60 : B긴급차량 40 설정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2호 제28호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형의 감면)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참조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4.24 선고 2013나60400 판결** 피고차량이 화재신고를 받고 화재현장으로 출동하던 긴급자동차로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려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차량이 정지신호에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응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이나 그 밖에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규정이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특히 긴급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진행 방향에 교차 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하는 등 교차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긴급자동차인 피고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 사건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었고 다른 자동차들은 그에 맞추어 통행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지하고 있어 원고들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러한 상황을 인식 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원고 차량을 일시 정지하여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전방의 신호만 믿고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28 긴급자동차 좌측통행 사고(1)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번호	-	도표 268
도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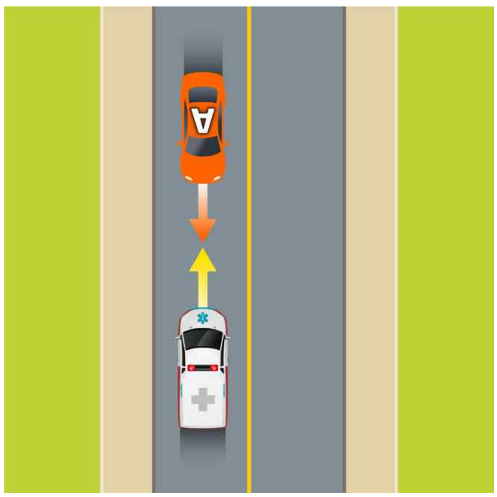
사고내용	-	직선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는 A차량과 **긴급상황으로** 도로중앙 또는 좌측통행 주행하는 B긴급차량과의 사고
기본과실	-	60:40
개정사유	◦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우선통행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실제 사고시에는 일반자동차 사고에 준용하는 경향 존재, 긴급차량측 불만으로 분쟁 발생 잦음 ◦ 최근 「길 터주기 운동」 확산, 긴급차량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상향(20만원→200만원)등 긴급차량 우선통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 및 제도가 강화된 점을 반영 기준 신설 *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개정(2017.12.26.) ◦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의 도로 중앙 및 좌측부분 '통행금지 예외조항(제29조 제1항)' 내용 반영하여 긴급차량이 아닌 차량은 진로를 양보하야 함(이 경우 전방을 주시하며 주의를 기울이면 사이렌을 울리면서 진입하는 긴급차량을 인식할 수 있음) ◦ 정상주행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긴급차량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긴급 상황으로 도로중앙 및 좌측통행하는 긴급차량도 안전에 주의해야 함(제29조 제3항)을 감안 기준 설정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2호 제28호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형의 감면)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29 긴급자동차 좌측통행 사고(2)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번호	-	도표 269
도표	-	
사고내용	-	교차로에서 정상 유턴 또는 좌회전하는 A차량과 **긴급상황으로** 도로중앙 또는 좌측통행 주행하는 B긴급차량과의 사고
기본과실	-	60:40
개정사유	◦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우선통행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실제 사고시에는 일반자동차 사고에 준용하는 경향 존재, 긴급차량측 불만으로 분쟁 발생 잦음 ◦ 최근 「길 터주기 운동」 확산, 긴급차량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상향(20만원→200만원)등 긴급차량 우선통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 및 제도가 강화된 점을 반영 기준 신설 *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개정(2017.12.26.) ◦ 도로교통법상 통행금지 예외조항(제29조 제1항)에 따라 긴급차량의 주행이 통행방법 위반이 아니므로 긴급차량이 아닌 차량은 정상주행에도 불구 좌측 통행하는 긴급차량에게 양보해야 함(이 경우 주의를 기울이면 사이렌을 울리면서 진입하는 긴급차량 인식가능) ◦ 다만 정상유턴 차량은 중앙선 침범 긴급차량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긴급 상황으로 도로중앙 및 좌측통행하는 긴급차량도 안전에 주의해야 함(제29조 제3항)을 감안 기준 설정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2호 제28호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형의 감면)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30 긴급자동차 대로 진입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번호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22	도표 270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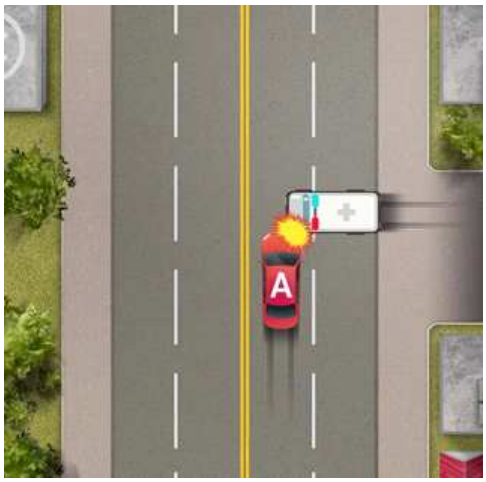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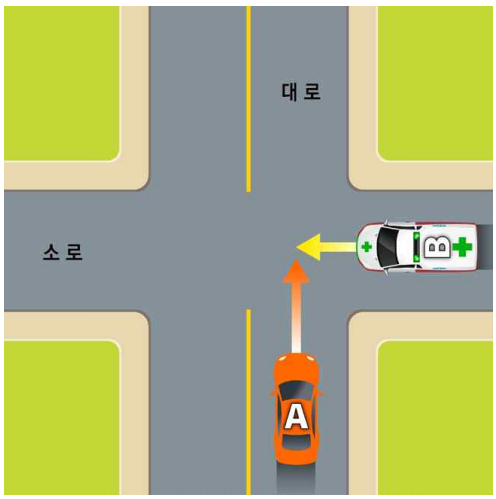
사고내용	대로에서 정상 주행하는 A차량과 **긴급상황으로**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B긴급차량과의 사고	좌동
기본과실	70:30	좌동
개정사유	◦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우선통행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실제 사고시에는 일반자동차 사고에 준용하는 경향 존재, 긴급차량측 불만으로 분쟁 발생 잦음 ◦ 최근「길 터주기 운동」확산, 긴급차량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상향(20만원→200만원)등 긴급차량 우선통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 및 제도가 강화된 점을 반영 기준 신설 *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개정(2017.12.26.) ◦ 도로교통법 상 교차로 내 긴급차량 접근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조항(제29조 제4항)에 따라 긴급차량에게 우선통행권이 있음(이 경우 긴급차량이 아닌 차량은 주의를 기울이면 사이렌을 울리면서 진입하는 긴급차량을 인식할 수 있음) ◦ 다만 긴급차량에게도 다른 교통 운행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A차량 70 : B긴급차량 30으로 기본과실 설정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2호 제28호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형의 감면)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31 긴급자동차 추월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번호	-	도표 271
도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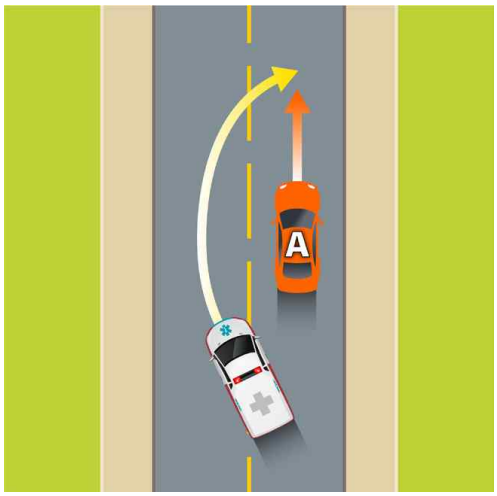
사고내용	-	직선도로에서 정상주행하는 A차량을 B긴급차량이 긴급상황으로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
기본과실	-	60:40
개정사유	◦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우선통행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실제 사고시에는 일반자동차 사고에 준용하는 경향 존재, 긴급차량측 불만으로 분쟁 발생 잦음 ◦ 최근 「길 터주기 운동」 확산, 긴급차량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상향(20만원→200만원) 등 긴급차량 우선 통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 및 제도가 강화된 점을 반영 기준 신설 *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개정(2017.12.26.) ◦ 도로교통법 상 긴급자동차 통행금지 예외조항(제29조 제1항), 앞지르기금지 예외조항(제30조 제2호)에 따라 긴급차량이 아닌 차량은 추월하는 긴급차량에게 양보해야할 의무가 있음(이 경우 긴급차량이 아닌 차량은 주의를 기울이면 사이렌을 울리면서 접근하는 긴급차량을 인식 할 수 있음) ◦ 다만 정상 직진 주행하는 A차량으로서는 긴급자동차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차도가 아닌 곳으로 진입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고려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2호 제28호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형의 감면)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32 긴급자동차 진로변경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번호	-	도표 272
도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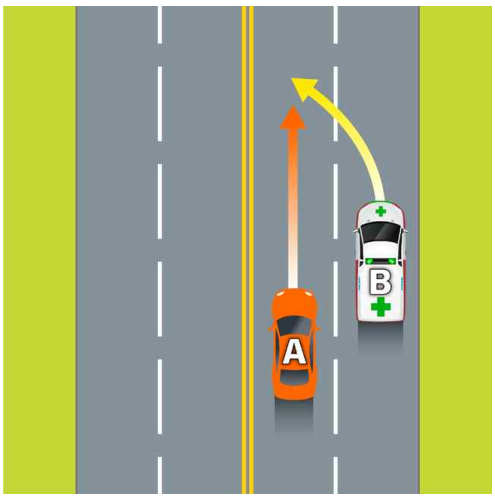
사고내용	-	직선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는 A차량과 긴급상황으로 A차량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B긴급차량과의 사고
기본과실	-	90:10
개정사유	◦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우선통행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실제 사고시에는 일반자동차 사고에 준용하는 경향 존재, 긴급차량 측 불만으로 분쟁 발생 잦음 ◦ 최근 「길 터주기 운동」 확산, 긴급차량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상향(20만원→200만원)등 긴급차량 우선통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 및 제도가 강화된 점을 반영 기준 신설 *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개정(2017.12.26.) ◦ 도로교통법 상 앞지르기 예외조항(제30조 제2호), 끼어들기 예외조항(제30조 제3호)에 따라 긴급차량이 아닌 차량은 진로변경하는 긴급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함(이 경우 긴급차량이 아닌 차량은 주의를 기울이면 사이렌을 울리면서 접근하는 긴급차량 인식 가능) ◦ 다만 정상직진주행 A차량으로서는 긴급차량의 예외적 앞지르기, 끼어들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준 설정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2호 제28호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형의 감면)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33 긴급자동차 대 진로변경차량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번호	-	도표 273
도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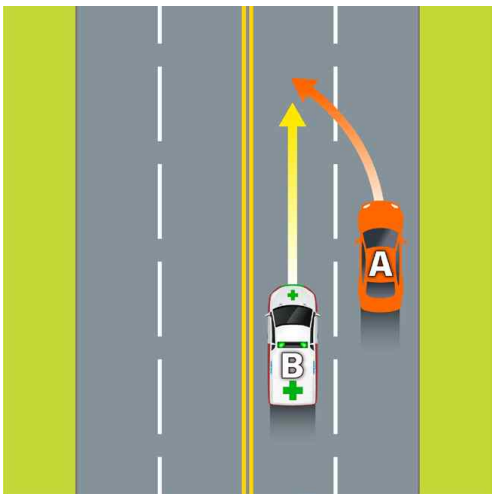
사고내용	-	직선도로에서 **긴급상황으로** 직진주행하는 B긴급차량과 B긴급차량 주행 차로로 진로변경하는 A차량의 충격사고
기본과실	-	100:0
개정사유	◦ 도로교통법은 긴급자동차에 대한 우선통행 및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기준이 부재하여 실제 사고시에는 일반자동차 사고에 준용하는 경향 존재, 긴급차량 측 불만으로 분쟁 발생 잦음 ◦ 최근「길 터주기 운동」확산, 긴급차량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상향(20만원→200만원)등 긴급차량 우선통행에 대한 사회적 여론 및 제도가 강화된 점을 반영 기준 신설 *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개정(2017.12.26.) ◦ 도로교통법 상 긴급차량이 우선통행 할 수 있는 진로양보의무 조항(제29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진로변경 한 A차량 과실가중(이 경우 다른 긴급차량 사고와 달리 긴급차량이 아닌 차량이 사고를 유발하는 운전행위를 한 것으로 과실이 매우 중대함)	
관련법규	◦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2호 제28호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형의 감면)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34 소로(우측도로) 직진 대(對) 대로(좌측도로) 좌회전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변 경]
번호	도표 341	좌동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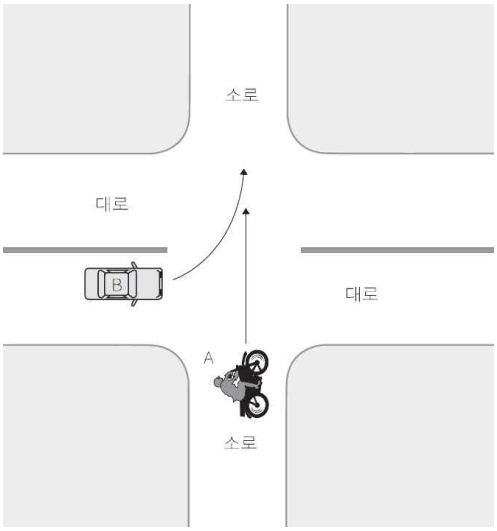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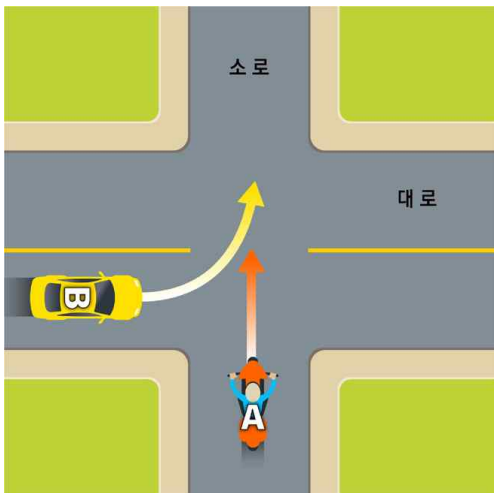
사고내용	소로(우측도로)에서 직진하는 이륜차와 대(對) 대로(좌측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자동차간 사고	좌동
기본과실	55:45	45:55
개정사유	◦ 대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크다고 본 도표 224의 취지와 자전거를 피해자로 본 도표 425와 형평성 고려 기본과실 변경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35 후행 직진 대(對) 선행 좌(우)회전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변 경]
번호	도표 364	좌동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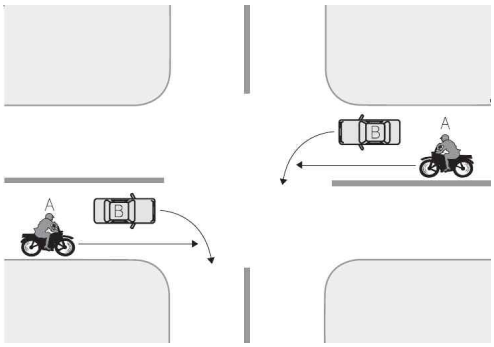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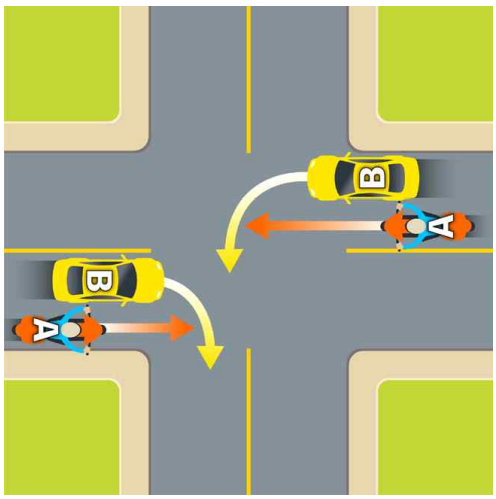
사고내용	후행 직진하는 이륜차와 선행 좌(우)회전하는 자동차간의 사고	동일차로 내에서 후행 직진하는 이륜차와 선행 좌(우)회전하는 자동차간의 사고
기본과실	40:60	60:40
개정사유	◦ 자동차와 이륜차가 병행 주행이 가능한 도로폭이라고 해서 이를 차 대 차 사고유형과 같이 준용한다면, 현실적으로 모든 차로에서 자동차와 이륜차가 병행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달리 적용해야함 ◦ 교통안전을 위해 병렬 주행보다 일렬 주행이 더 바람직한 점, ◦ 또한 동일차로 내에서 발생하는 차 대 이륜차 사고유형은 주로 이륜차의 무리하고 급격한 주행이 원인이 되고 있어, 「교통우자의 위험부담 원칙」의 적용은 과도한 이륜차 보호임을 감안, 사고내용 및 기본과실 설정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1항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1항, 제2항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제1항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제1항	
참조기준	◦ 법원 재판실무편람 163p	

36 선행 좌(우)회전 대(對) 후행 직진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변 경]
번호	도표 366	좌동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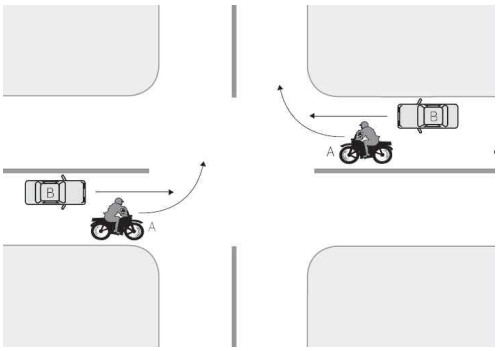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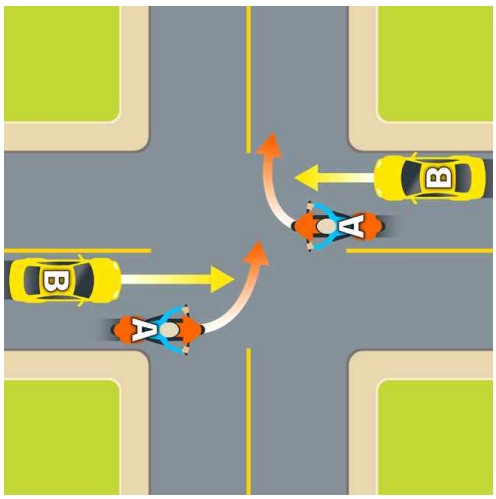
사고내용	선행 좌(우)회전하는 이륜차와 후행 직진하는 자동차간의 사고	동일차로 내에서 선행 좌(우)회전하는 이륜차와 후행 직진하는 자동차간의 사고
기본과실	60:40	30:70
개정사유	◦ 35번 참조(도표 364)	
관련법규	◦ 35번 참조(도표 364)	
참조기준	◦ 35번 참조(도표 364)	

37 후행 직진 대(對) 선행 좌(우)회전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변 경]
번호	도표 370	좌동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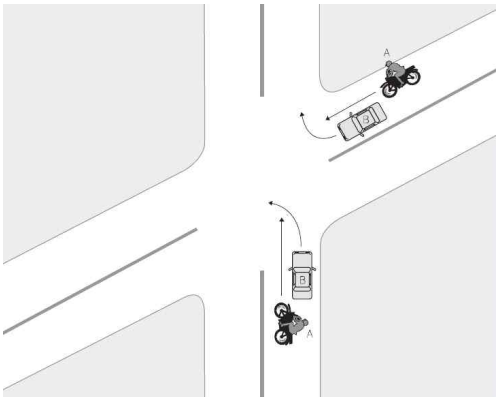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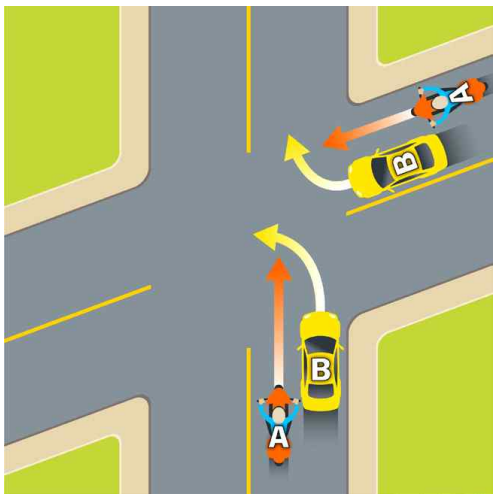
사고내용	예각형 사거리 교차로에서 후행 직진하는 이륜차와 선행 좌(우)회전하는 자동차간 사고	예각형 사거리 교차로에서 **동일차로 내** 후행 직진하는 이륜차와 선행 좌(우)회전하는 자동차간 사고
기본과실	30:70	50:50
개정사유	◦ 35번 참조(도표 364)	
관련법규	◦ 35번 참조(도표 364)	
참조기준	◦ 35번 참조(도표 364)	

38 선행 좌(우)회전 대(對) 후행 직진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변 경]
번호	도표 371	좌동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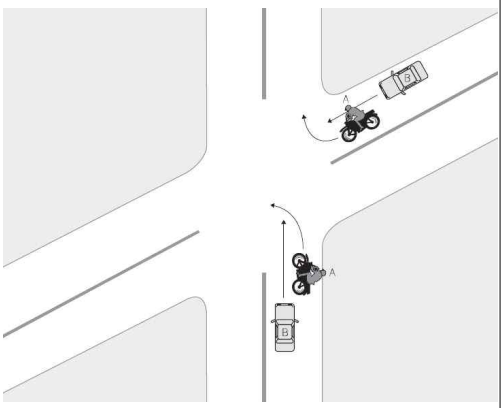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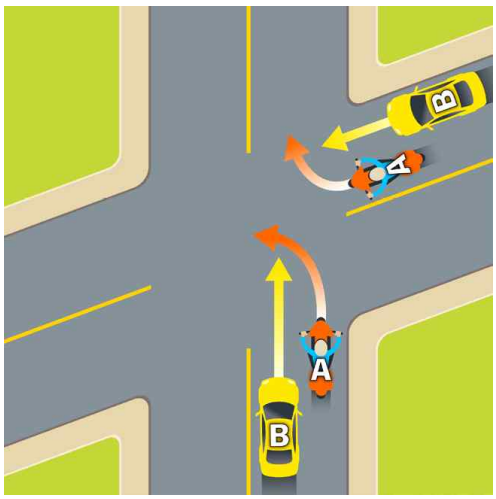
사고내용	예각형 사거리 교차로에서 선행 좌(우)회전하는 이륜차와 후행 직진하는 자동차간 사고	예각형 사거리 교차로에서 **동일차로 내** 선행 좌(우)회전하는 이륜차와 후행 직진하는 자동차간 사고
기본과실	50:50	40:60
개정사유	◦ 35번 참조(도표 364)	
관련법규	◦ 35번 참조(도표 364)	
참조기준	◦ 35번 참조(도표 364)	

39 정체도로에서 교차로 급 진입 사고(이륜차)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변 경]
번호	도표 376	좌동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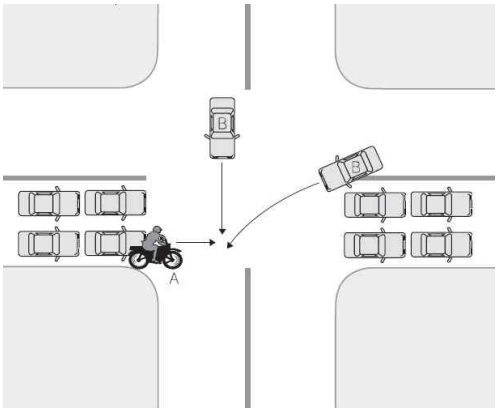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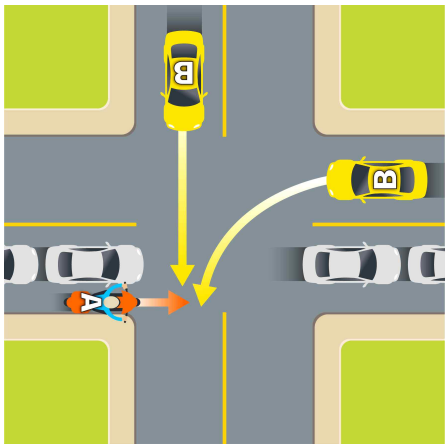
사고내용	정체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교차로에서 진입하는 이륜차와 측면 또는 맞은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간 사고	좌동
기본과실	30:70	70:30
개정사유	◦ 35번 참조(도표 364)	
관련법규	◦ 35번 참조(도표 364)	
참조기준	◦ 35번 참조(도표 364)	

40 자전거 도로 사고

항목	개정 後 [신 설]		
번호	도표 453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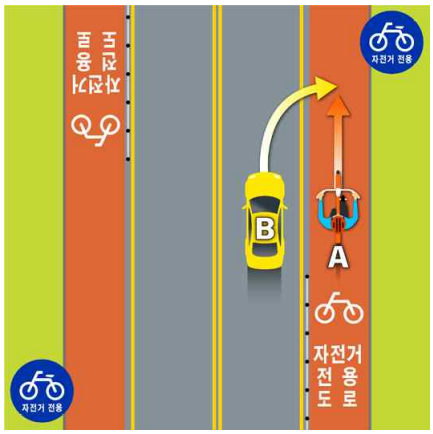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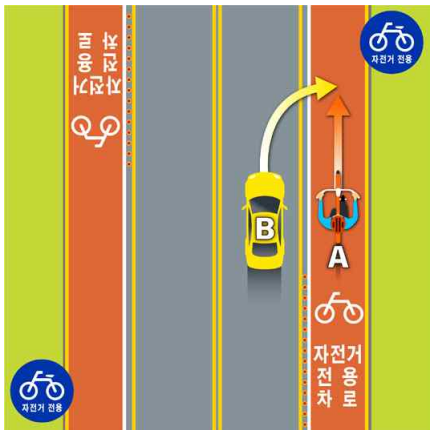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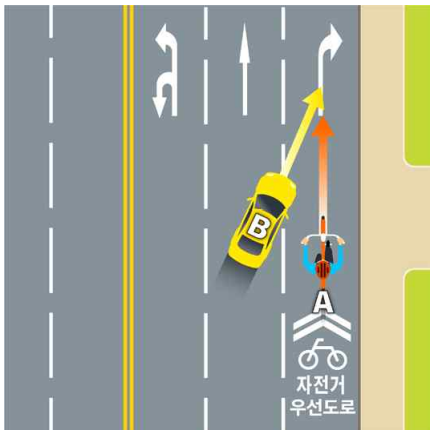		
사고내용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중인 자전거와 차로에서 자전거 도로로 진로변경하는 B차량간의 충격사고	Case1) 자전거전용도로 Case2) 자전거전용차로 Case3) 자전거우선도로	
기본과실	Case1) 0:100	Case2) 0:100	Case3) 10:90
개정사유	◦ 레저산업의 발달로 자전거 여행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어 관련 도로시설물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 자전거 도로유형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가 다르지만 자동차 운전자의 이해도가 낮아 해당 도로시설물에서 사고 위험도가 높으므로 경각심 제고 위해 관련 기준 설정 ◦ 자전거우선도로는 원칙적으로 차량도 통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 ◦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4항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도로와의 평면교차) 제3항		

41 낙하물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변 경]
번호	도표 508	좌동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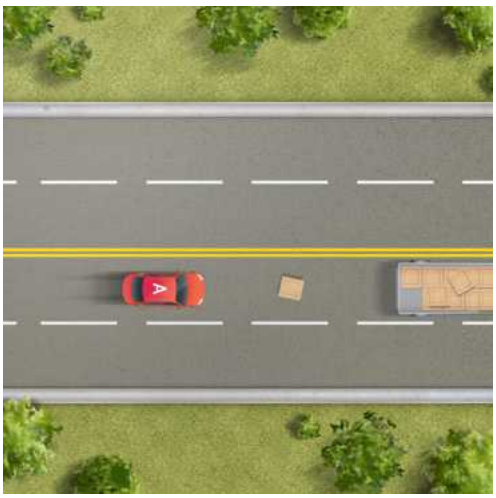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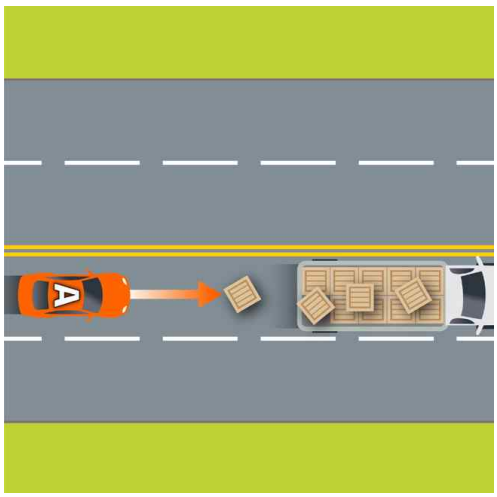
사고내용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선행 B차에서 떨어진 적재물과 후행 A차와의 충격사고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선행 B차에서 떨어진 적재물과 **안전거리 유지** 주행중인 후행 A차와의 충격사고
기본과실	40:60	0:100
개정사유	◦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에 의거 **적재방법 위반 교통사고**에 대하여 **12대 중과실**로 하고 있어 **낙하물 차량**의 **기본과실 가중** ◦ 개정 前 도표는 후방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를 기본가정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가정**이 **정상주행**에도 불구 **낙하물**을 **회피**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하고 있어 ◦ **후방차량**의 **안전거리 유지 주행**을 **가정**하여 **기본과실 변경(안전거리 미확보**는 **수정요소**에 **추가)**	
관련법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 제2항, 제4항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1항 ◦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4항	
참조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3.6. 선고 2017나47047 판결 야간에 B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를 선행하던 중 오른쪽 뒷바퀴가 빠지면서 2차로에 정차하였고, 때마침 2차로를 후행하던 A차량이 3차로로 빠져나가려다가 3차로에 B차량의 빠진 타이어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2차로로 변경하다가 B차량을 추돌한 사고 : B과실 80%	

42 갓길 진로 변경 사고

항목	개정 前	개정 後 [신 설]
번호	비정형 과실기준 도표 B-5	도표 511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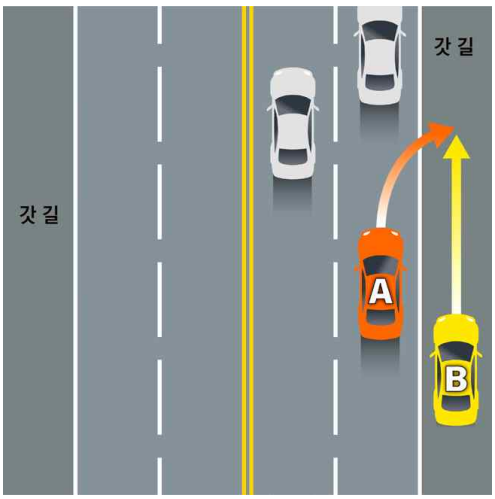
사고내용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A차량이 선행 갓길로 진로 변경하다가 갓길에서 후행 직진 주행 중인 B차량과 발생한 사고	좌동
기본과실	60:40	60:40
개정사유	◦ 양 차량 모두 갓길 운행이라는 점에 위법하나 양측 행태에 대하여 과실판단 기준이 없어 사고 시 제각각 판단하여 분쟁 발생 ◦ B차량이 갓길 운행이라는 위법한 부분이 있으나, A차량은 이를 알고도 무리하게 갓길로 진로변경한 점을 감안 기본과실 설정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제3항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제1항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제1항	
참고판례	◦ 의정부지방법원 2018.2.21. 선고 2016가단126159 판결 편도2차로 도로에서 피고는 2차로 우측의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차량 앞쪽 갓길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원고 60% : 피고 40%	